

[제 1366 호]

2017년 4월 18일(화)

고양시보



차 례

입법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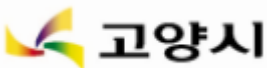
고양시 공고 제2017-756호	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고양시 공고 제2017-758호	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0

고 시

고양시 고시 제2017-136호	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75호선외 1개소)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(경미한사항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	17
-------------------	--	----

공 고

고양시 공고 제2017-755호	도시계획시설[도로:소로1-167호선(장진내들길)]사업 공사완료 공고	21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18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환경친화사업소에서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·운영 중인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함에 따라,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근거,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.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의류수거함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함.(안 제2조제2항)
- 나.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정비함.(안 제6조)
- 다.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지 않은 “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점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” 과 “변상금 분할납부 사항” 을 삭제함.(안 제8조제1항)

- 라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함.(안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별표 1)
- 마. 의류수거함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하고,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지가격 산정기준을 “산술평균가격” 에서 “가중평균가격” 으로 정비함.(안 별표 1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17년 5월 8일까지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- 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- 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도로정책과)
 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,(고양시청 제2별관)
 - 전 화 :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 (031-8075-2843)
 - 팩 스 : 031-8075-492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의류수거함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점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.

제8조의 제목 “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” 를 “(점용료의 분할납부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점용료 및 변상금을” 을 “점용료를” 으로,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” 을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” 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” 을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” 으로 한다.

별표 1 제11호의 주택란 다음에 의류수거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비고 제1호 전단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산술평균가격” 을 “가중평균가격” 으로 한다.

점용물의 종류	기준 단위		점용료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의류수거함	점용면적 1제곱미터	1년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도로정책과
입안자	과장 성명	도로정책과장 성 송 제
	팀장 성명	건설행정팀 이 광 섭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재 훈 (031-8075-284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광고탑 및 광고판 <p><u><신 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	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의류수거함 3.
<p>제6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도로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 시설, 송유관시설, 가스공급시설, 열수송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.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사업이 아닌 경우 5. <삭제 2015.12.29.> 6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	<p>제6조(점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7. <u>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</u></p> <p>8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제1항제1호·제4호·제5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.</p> <p>2.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.</p> <p>3.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.</p> <p>4.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(이하 "주상복합건물"이라 칭한다)의 경우에는 주거부분(면적 비율)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되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 전용은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영업전용은 전액 부과한다.</p> <p>5.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자동차관련시설(주유소 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음식점 등 영리목적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중 주택연면적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감면한다.</u></p> <p>6.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<u>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.</u>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<u>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</p> <p>1. <u>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 내로 한다.</u></p> <p>2. <u>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</u></p> <p>3. <u>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<u>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</p> <p>① <u>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.</p> <p>제9조(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점용료의 분할납부)</p> <p>① <u>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점용료를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.....</p> <p>제9조(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.....</p>

현		행		개 정 안		
[별표 1]		점용료 산정기준(제4조제1항 관련)		점용료 산정기준(제4조제1항 관련)		
점용물의 종류	기준 단위	점용 단위	기간 단위	점용물의 종류	점용 단위	점용료
					점용 단위	기간 단위
1. ~ 10. (생 략)			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 한 것 외의 공작물·물건 및 시설	농업 및 식물재배,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	점용 면적 1제곱 미터	1년
			
			
			
	주택		
	<신 설>			의류수거함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	그 밖의 것		
비고		비고		비고		
1.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 다)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 지는 제외한다)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.		1.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 다)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 지는 제외한다)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.		1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가중평균가격.....		
2. ~ 8. (생 략)		2. ~ 8. (생 략)		2. ~ 8. (현행과 같음)		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18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(2016. 8.) 결과에 따라 융자 상환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,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융자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「융자금 상환의 준용 법령을 “ 「지방재정법」 ” 으로 정비함.

(안 제9조제1항)

나.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비함.(안 제11조제3호) 규정

다. 융자 상환금 면제 및 결손처분의 준용 법령을 “ 「지방세기본법」 ” 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” 으로 정비함.(안 제13조, 제14조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7년 5월 8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복지정책과)
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(주교동)
- 전 화 :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 (031-8075-3252)
- 팩 스 : 031-8075-4915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
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용자 감면조치”를 “면제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면제) 시장은 용자를 받은 사람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결손처분) ① 시장은 용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.

1. 해당 용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
2. 용자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
3. 용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용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용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복지정책과
입안자	과장 성명	복지정책과장 성창석
	팀장 성명	자립지원팀장 박성도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경재 (031-8075-3252)

현행	개정안
<p>3. <u>그 밖에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3. <u>용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용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용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.</u></p>

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75호선의 외 1개소)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고양시 고시 제2015-256호로 고시된 일산서구 가좌동 1020-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(도로:중로1-75호선, 중로1-74호선)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면적 변경의 사유로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제출되어
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4월 18일

고 양 시 장

1.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시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1	74	20	보조간선도로	1,608	중로1-75 가좌동 867-5	중로1-73 가좌동 158-3	일반 도로	고양시고시 제56호 (2001.6.22)	
변경	중로	1	74	20	보조간선도로	1,608	중로1-75 가좌동 867-5	중로1-73 가좌동 158-3	일반 도로		
기정	중로	1	75	20	보조간선도로	7,521	광로2-1 구산동 1422-1	대로2-1 덕이동 207-7	일반 도로	고양시고시 제56호 (2001.6.22)	
변경	중로	1	75	20 ~20.5	보조간선도로	7,521	광로2-1 구산동 1422-1	대로2-1 덕이동 207-7	일반 도로		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 1-74호선, 중로 1-75호선	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변경	○ 공사 외 필지 사업구간 제척 및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면적 변경

2. 실시계획 작성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

-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20-3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
- 명칭 : 중로 1-75호선 외 1(가좌지구~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)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시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74	20	보조간선 도로	1,608	중로1-75 가좌동 867-5	중로1-73 가좌동 158-3	일반 도로	-	고양시고시 제56호 (2001.6.22)	
시행	중로	1	74	20	보조간선 도로	7	중로1-75 가좌동 971-1	중로1-74 가좌동 970-3	일반 도로	-		
기정	중로	1	75	20	보조간선 도로	7,521	광로2-1 구산동 1422-1	대로2-1 덕이동 207-7	일반 도로	-	고양시고시 제56호 (2001.6.22)	
시행	중로	1	75	20 ~20.5	보조간선 도로	230.6	중로1-75 가좌동 1020-3	중로1-75 가좌동 1020-6	일반 도로	-		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-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 600)
- 성명 : 고양시장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- 인가일로부터 ~ 2017. 06. 30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
외의 권리의 명세: 별첨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 : “바”항과 동일

2. 관계도면 : “계재생략”

○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·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(변경)

편 입 토 지 조 서

일괄 번호	동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관계	
1	구산동	1150	전	4,599	173	박상춘	구산동 564-12				기정
		1150-2	전	173	173	공	고양시				변경
2	구산동	1151	전	5,164	253	박상춘	구산동 564-12				기정
		1151-1	전	253	253	공	고양시				변경
3	구산동	1152	답	2,207	0	김경숙	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 958햇빛마을2403-1003	주식회사 하나은행	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1가101-1	근저 당권	기정
		1152-4	답	44	44	공	고양시				변경
4	가좌동	967	전	1,934	35	한상업	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6-8				기정
		967-3	전	35	35	공	고양시				변경
5	가좌동	967-1	전	1,986	38	정순예	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6-8				기정
		967-4	전	38	38	공	고양시				변경
6	가좌동	968	잡	248	6	김기열	가좌동 968-2	송포농업 협동조합	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대화동759-4	근저 당권	기정
								서남수정 새마을금 고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952-13	근저 당권	
		968-4	잡	6	0	김광호	서울 종로구 종로60길 7-4(승인동)	송포농업 협동조합	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대화동759-4	근저 당권	변경
7	가좌동	971-3	구	379	304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기정
		971-6	구	304	304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변경
8	가좌동	970	전	868	6	배병복	마두동783 강촌마을201-1102				기정
		970-4	전	6	6	공	고양시				변경
9	가좌동	971-1	구	32	14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기정
		971-5	구	14	14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변경
10	가좌동	970-3	도	21	6	공	고양시				기정
		970-5	도	6	6	공	고양시				변경
11	가좌동	1038	답	3,838	11	유경열	성석동 산205-3				기정
						이선미	성석동 산205-3				
		1038-3	답	11	11	공	고양시				변경
12	가좌동	971	구	453	453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
13	가좌동	1020-3	도	972	972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
14	가좌동	972-2	구	493	493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
15	가좌동	1037-1	도	86	86	공	고양시				
16	가좌동	1037	답	4,257	82	장기창	장항동 668-6				기정
		1037-3	답	82	82	공	고양시				변경
17	가좌동	1036-3	답	1,488	26	입덕자	서울은평구갈현동542-1 현재트윈빌101-702				기정
		1036-6	답	26	26	공	고양시				변경

일괄 번호	동	지번	지 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관계	
18	가좌동	1036-1	도	61	61	공	고양시				
19	가좌동	1036	장	660	14	김도익	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789 강촌마을519-1006	농업협동 조합중앙 회	서울중구 충정로1가75	근저 당권	기정
		1036-5	공장	14	14	공	고양시				변경
20	가좌동	1034-1	도	54	54	공	고양시				
21	가좌동	1035	답	3,097	40	정문숙	대전서구문산동970 향촌아파트107-1502				기정
		1035-2	답	40	40	공	고양시				변경
22	가좌동	973-2	도	494	245	공	고양시				기정
		973-8	도	245	245	공	고양시				변경
23	가좌동	980	구	211	175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기정
		980-3	구	175	175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변경
24	가좌동	978	전	2,277	32	서광치	시흥시정왕동1877-3 세종아파트117-1002	일산농업 협동조합	경기도고양시일산서 구 일산동594-28	근저 당권	기정
		978-2	전	32	0	서광치	경기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4-8, 501호(정왕동)	일산농업 협동조합	경기도고양시일산서 구 일산동594-28	근저 당권	변경
25	가좌동	1020-8	도	577	577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
26	가좌동	979	전	3,844	106	이금자	가좌동 299				기정
		979-3	전	106	106	공	고양시				변경
27	가좌동	980-1	구	136	132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기정
		980-4	구	132	132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변경
28	가좌동	1020-6	도	4,135	513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기정
		1020-1 6	도	510	510	국	농림수산식품부				변경
		1020-1 7	도	3	3						
29	가좌동	973-4	도	308	256	공	고양시				기정
		973-9	도	252	252	공	고양시				변경
합 계				44,879	5,163						기정
				5,203	5,165						변경

도시계획시설[도로:소로1-167호선 (장진내들길)]사업 공사완료 공고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고시 제2016-34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시설[도로:소로1-167호선(장진내들길)]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 법 제98조(공사완료의 공고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17. 4. 18.

고 양 시 장

1. 공사완료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945-2번지 ~ 설문동 889-2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도시계획시설(소로1-167호선)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규 모				연장(m)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
결 정	소 로	1	167	10	802	
금회시행	소 로	1	167	10	802	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주 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6(마두동 815)

- 성 명 : 고양시장(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)

마. 사업 시행기간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17.12.31.

바. 관계도서 : 게재생략.